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관광숙박업(관광호텔)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(을지로5가 19-29 외 2)**

1. 우리 구 을지로5가 19-29 외 2필지 지상에 관광숙박업(관광호텔)을 신축하기 위한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
2.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승인 기준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법령에 적합함으로
3.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6조(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국유지·공유지의 확보)에 의거 사업부지내 국유지를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관광숙박업(관광호텔)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고자 합니다.

□ 사업계획 승인 내용(을지로5가 19-29 관광호텔)

사업자	건설장소	대지면적 (㎡)	관광숙박시설 연면적(㎡)	객실	부대시설	주차 대수	규모(층)	승인 조건	비고
***** ***	***** ** ***** *****	*****	*****	***	***** ***** ***	**	***** *****	***** ***** *****	**

- 붙임 1. 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서 1부.
2. 사업계획조건부승인서 1부. 끝.

